

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0 - 6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0. 4. 14.
제 안 자 : 손관준의원외4명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매년 “정기회” 기간 중에서 매년 “제1차 정례회” 기간 중으로 변경

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 제2항 중 “정기회”를 “제1차 정례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